仲裁硏究, 第 23 卷 第 1 號
2013년 3월 2일 발행, pp. 85~105

논문접수일 2013. 2. 2
심사완료일 2013. 2. 21
게재확정일 2013. 2. 26

엔터테인먼트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System for Entertainment Disputes Resolution

김 상 찬*
Sang-Chan Kim

〈 목 차 〉

I. 서론
II.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특징과 유형
III.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중재 적합성
IV. 엔터테인먼트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엔터테인먼트, 분쟁해결, 대체적 분쟁해결(ADR), 중재, 전속매니지먼트계약, 계약의 불공정성, 엔터테이너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 론

엔터테인먼트란 즐거움과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가시간을 즐기는 모든 활동이 엔터테인먼트의 대상이 된다. 그 예로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도서, 스포츠, 음반. 기타 레저 활동 모두가 엔터테인먼트에 속한다.[1]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사업가와 엔터테이너들이 자신의 특성과 전문성에 기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과정에서 사업자는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엔터테이너는 자신의 확실한 대우를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양자 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2]

최근의 한류열풍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 연예계나 경제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3]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7월부터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 연예인의 상황과 활동영역, 기획사의 규모와 시장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예방에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4]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 또한 짧은 활동기간을 속성으로 하는 엔터테이너들에게는 너무 오랜 시간을 소송에 뺏기는 것은 물론 영업에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성과 스타의 사생활이 소송과정에서 공개되어 비밀보장이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

1) 윤석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계약법적 고찰 : 다양한 계약유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12, p.3.

2) 엔터테인먼트 계약은, 전속계약, 콘텐츠 유통계약, 스폰서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사업자와 엔터테이너 간의 전속계약이다(한웅길, "전속계약의 계약금(전속금) : 연예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4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2, p.121 이하 참조).

3) 최근 연예계의 뉴스를 장식한 동방신기 멤버 중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그 한 예이다. 2009년 7월, 동방신기 멤버들은 13년이라는 장기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전속계약에 대하여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동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내렸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7, 2009카합2869), 가처분 이의와 함께 본안소송으로 이어져 3년여 동안 소송이 계속되다가 2012.11.28. 임의조정을 통하여 전속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여 끝이 났다.

4)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장재옥, "K-POP 시대 엔터테인먼트법제의 정비방안", 「경영법률」 제23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p.110 이하 참조.

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중재 등 ADR로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이 중재로 해결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본고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중재의 적합성에 관하여 살펴본 후, 엔터테인먼트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의 주제와 유사한 선행연구로는 윤석찬(2005), 남형두(2007), 이범수(2009), 최승수·안건형(2009), 함영주(2010), 오석웅(2010), 김성태(2012) 등이 있다. 윤석찬 연구는 계약유형을 주로 다루고 있고,[5] 남형두, 최승수·안건형, 오석웅 연구는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중재 적합성을 주로 다루고 있고,[6] 이범수 연구는 엔터테인먼트분쟁 일반론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7] 김성태 연구는 중재제도가 아닌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8] 함영주 연구는 본고의 주제와 가장 유사하나,[9] 미국의 조정·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 차별된다고 할 것이다.

Ⅱ.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특징과 유형

1.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특징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발생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징에 기인한 분쟁과 전속계약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분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징에 따른 분쟁발생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기능과 에이전시 기능을

5) 윤석찬, 전게논문, pp.45-62.
6) 남형두, “엔터테인먼트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주체측면에서의 이해”, 「민사법학」 제35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3, pp.299-337; 최승수·안건형,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9.8, pp.49-72; 오석웅, “중재제도를 통한 엔터테인먼트분쟁의 해결 : 연예인전속매니지먼트계약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11, pp.121-139.
7) 이범수, “엔터테인먼트의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12, p.5.
8) 김성태, “엔터테인먼트사업에 있어서 전속메니지먼트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5, pp.171-200.
9) 함영주, “미국엔터테인먼트산업과 조정·중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4권 제1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pp.104-126.

함께 수행하고 있다.[10]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매니지먼트 회사와 에이전시 회사는 통상 분리되어 있으며, 에이전시의 경우는 미국 에이전시 연합의 사업자 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데 비하여,[11] 우리나라는 두 회사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니지먼트 사업은 모험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매니지먼트사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어린 신인을 발굴하여 각종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관리, 외모성형, 나아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상품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교육·훈련기간으로 인하여 전속계약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훈련을 시킨 엔터테이너가 널리 대중화되어 인기도가 상승하였을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성공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점에서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벤처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매니지먼트사와 엔터테이너 간의 불평등한 수익분배와 과도한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된다.[12]

매니지먼트 사업 자체만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영화, TV프로그램, 음반제작 등을 겸하는 경향도 있다. 매니지먼트사들이 제작업을 겸하면서 소속 엔터테이너를 그 제작 영화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경우에는 이행상충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13]

나. 전속계약의 내용에 따른 분쟁발생

대부분의 전속계약서의 경우, 소속사에는 권리·의무조항이 있으나, 엔터테이너에게는 의무조항만 있고 권리조항이 없으며, 의무불이행시 과도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 계약의 일방적 양도·해지 및 일방적 계약해석 조항 등 엔터테이너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두어 불공정한 전속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14] 전속계약서에 엔터테이너의 동의 없이 소속사가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10) 매니지먼트란 엔터테이너의 경력관리, 즉 소속 엔터테이너를 위한 출연작품 또는 악곡의 선택, 홍보, 이미지 관리, 활동스케줄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하며, 에이전시란 소속 엔터테이너를 위한 출연작품을 섭외하거나 각종 출연계약을 성사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11) 최정환, "한국의 매니지먼트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기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pp.56-57.

12) 이범수, 전게논문, p.45.

13) 최정환, 전게 발표자료, p.63.

14) 권기덕, "전문인의 전속계약 : 연예·체육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86.

규정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소속사의 해석이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15)]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엔터테이너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규정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16)]

2.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유형

가. 미국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중 온라인에서 거론되는 사건들의 상당수가 엔터테이너에 관한 사건들이라고 한다. 대상도 배우, 쇼 참가자, 매니저, 모델, 음악가, 제작사 등 매우 다양하며, 사건내용도 파산, 계약상의 분쟁,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추, 명예훼손, 이혼, 임대차관계, 소유권 관계 등 다채롭다.[17)]

대표적인 유형의 분쟁은 그룹해체(band breakups) 관련 사안이다. 그룹해체는 종종 이혼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그룹해체 후 음반 등의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유명 R&B 그룹인 Destiny's Child가 1992년 창립된 이후 2000년에 2집 앨범을 내고 나서 오리지널 멤버 중 2명을 교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축출된 멤버들이 그룹과 매니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7년간 계속된 그룹은 해체되었다. 그해 말 화해를 했으나, 2년 뒤 또 다시 소가 제기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계약 관련 분쟁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며 분쟁은 예술가적 차원의 독창성에서부터 돈의 액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가수, 작곡가 겸 배우였던 프린스(Prince Rogers Nelson)가 워너브라더스사와의 계약에 항의하며 발음할 수 없는 기호로 자신의 이름을 바꾼 다음 얼굴에 노예(slave)라고 글씨를 쓰고 항의한 사건이 이에 속한다.

---

15)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 관한 보도자료, 2002.7.29.

16) 전속계약에서 위약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의 5배, 총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의 1억원"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SM엔터테인먼트의 HOT 멤버 토니안의 경우 계약금의 3배, 총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 이외에 별도 5천만원을 내도록 하였고, 문희준(HOT), 장진영(블랙비트), 황윤석(플라이투더스타이)의 경우 계약금의 5배, 총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예상이익의 3배, 별도 일억원을 규정하는 등 부당한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 관한 보도자료, 2004. 6.18).

17) 함영주, 전게논문, p.109.

세 번째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독창성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많이 생긴다. 예컨대 2002년 MGM 스튜디오가 뉴라인 시네마를 상대로, 미국영화협회(the 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America)에 제소하여, 뉴라인 시네마가 오스틴 파워스 스파이 시리즈에 'Austin Powers in Gold member'라고 한 것은 자신들의 영화 골드핑거(Goldfinger)의 이름을 모방한 것으로서 MGM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케이스를 들 수 있다.

네 번째로 명예훼손 역시 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쟁의 단골 유형이다. 예컨대 배우 겸 제작자인 탐 크루즈(Tom Cruise)가 슬레이터(Chad Slater)를 상대로 자신이 게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실을 미디어 아울렛(media outlet)에 이메일로 보내면서 증거가 있다고 한 마이클 데이비스(Michael Davis)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로 엔터테이너에 관한 형사사건을 들 수 있다. 예컨대 1998년 슈퍼모델 나오미 캠밸의 전 조수였던 조지아 갤러니스(Georgia Galanis)가 캠밸이 전화기로 자신의 머리를 두 번이나 때렸으며, 자신을 벽에 밀쳤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갤러니스는 캠밸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8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18]

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속매니지먼트계약과 관련하여 미국의 분쟁유형 들이 합쳐져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예컨대 그룹해체나 전속계약해지 등은 불공정한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고,[19] 불공정한 전속계약 속에는 과도한 계약기간이나 위약금, 일방적 해지규정 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20]

(1) 전속계약의 불공정성 문제

엔터테이너와 매니지먼트사 간의 전속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일방적

---

18) 함영주, 상게논문, pp.110-111.

19) 엔터테이너들은 문학, 예술이나 스포츠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 신장하는 데에는 대체로 문외한들이며, 계약체결도 제작자나 유통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따르거나 잘 해보자고 악수만 하고 실행에 착수하는 이른바 '악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또 엔터테이너 중에는 미성년자가 상당수 있어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흠결한 경우도 많다(손경한 편저, 「엔터테인먼트법(상)」, 진원사, 2008, p.144).

2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최승수·안건형, 전게논문, pp.59-64; 김성태, 전게논문, pp.177-181 참조..

으로 정한 표준계약서에 내용을 가감하여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표준계약서는 매니지먼트사에 유리한 규정이 대부분이고 과다한 의무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심각한 불공정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21] 엔터테이너들은 법의식이 낮아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계약금, 출연료 등의 금액과 계약기간만 보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록 계약조건에 불만이 있더라도 연예계의 특성상 활동창구가 제한되어 있어서 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2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7월 (주)혜성미디어 등 6개 음반제작사의 가수전속계약서 중 일부규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효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23] 대형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후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는 행위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불이익제공행위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24]

(가) 전속계약기간을 둘러싼 분쟁

존속계약의 기간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불공정한 계약'을 판단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 상의 '7년'을 기준으로, '5년'의 계약기간과 불가피한 경우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거나,[25] '6년'의 계약기간은 경제적 활동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26] 그러나 전속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 판례가

---

21) 권기덕, 전게논문, p.86; 연기영, "전속계약상 연예인의 법적 보호문제",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5, p.166.

22) 이우석,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인의 법적보호", 「법학연구」 제3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6, p.322.

23)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 제20002-056호 2002조기0752.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장정애, "연예인 전속계약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제419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8, pp.31-32 참조.

24) 최승수안건형, 전게논문, p.65. 공정거래위원회 2002.7. 31. 시정명령; 서울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2누13613 시정명령취소.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16. 선고 2011가합83573.

26)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장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무명의 신인을 발탁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을 통하여 매니지먼트사가 수익을 올리게 되기까지 상당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수익을 거둘 시점에 계약이 끝나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큰 점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가합2351, 13405).

늘고 있다.[27] 전속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로 된 사례도 있다.[28]

(나)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의 위약금은 다른 종류의 계약보다 그 액수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신인단계에서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중적 인기를 얻자마자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경우 그러한 연예인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많은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약벌로서의 위약금 규정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다.[29] 실무상 위약금 규정은 손해배상예정으로 판단되고 법원은 대부분 위약금의 액수를 감액해주는 경향이 있다.[30]

(2)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

엔터테이너가 소속 매니지먼트사와의 신뢰가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매니지먼트사가 구체적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

---

27) 유키스(U-KISS) 멤버 우성현과 ㈜Xing엔터테인먼트 간의 사건에서, 계약기간을 첫 번째 음반발매 후 10년으로 정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연예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계약조항에 대하여 법원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3.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또한, 동방신기 멤버 중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과 SM엔터테인먼트 간의 가처분 이의사건에서, 법원은 연예인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 후 전속계약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그 인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속계약기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로계약의 법률상 제한기간인 3년(민법 제659조) 혹은 1년(근로기준법 제16조) 등과 비교해 볼 때 13년이라는 기간은 아이돌 스타로서 사실상 종신계약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15. 선고 2010카합1245).

28) 서울중앙지판 2005.10.13, 2005가합3125; 서울중앙지판 2006.10.11, 2006가합37354; 서울남부지판 2007.10.25, 2007가합2351, 13405 등.

29) 연예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총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에다 그와 별도로 위약벌 1억원 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도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은 쌍방의 권리·의무 사이에 불균형이 지나쳐 이 조항들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10.3.17. 선고 2009나38065).

30) 앞의 각주 3)의 동방신기 사건의 경우에도 과도한 손해배상금 규정도 하나의 해지요건으로 되고 있었다. 다만, 조정으로 끝나서 과도한 손해배상금 규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은 아니지만 각종 일처리에 대한 불만과 감정상의 갈등이 원인이 복합되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31] 법원은 이러한 점이 문제된 사례에서 엔터테이너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다.[32]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 당사자 간의 계약의무위반이 없더라도 계약의 해지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33]

또한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분쟁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엔터테이너측은 주로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위반 사항으로 출연교섭 등 에이전시 업무, 차량지원, 교육, 로드매니저 지원업무 태만, 수입정산의무 불이행 등을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다. 실제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계약해지가 인정된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34] 다만 판례 중에는 출연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의무위반이 아니라는 사례도 있다.[35] 반대로 매니지먼트사가 엔터테이너 측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한 사례도 있는데, 주로 연예인 측이 출연계약이나 음반취입의 거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 체결 등이 종종 문제로 되고 있다.[36]

(3) 전속계약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에는 통상적인 계약조항으로 매니지먼트사가 소속연예인의 예명, 애칭, 사진, 초상, 필적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규정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37]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속계약기간의 종료 등으로 전속계약

---

31) 손범수,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제26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p.291.

32) 판례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하여 엔터테이너가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대체불가능한 것으로서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의 유지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엔터테이너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4.5.11. 선고 2004라143 판결).

33) 이재경, “연예인 전속계약과 중재”, 중재」2009년 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35면.

34) 최근 사례로, 가수 이루마가 스톰프뮤직의 정산내역 공개의무위반과 정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한 전속매니지먼트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스포츠서울, “이루마,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서 승소”, 2012.4.25. 기사)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7.20. 선고 2006가합74872 판결.

36) 원고가 기획한 뮤직비디오 촬영과정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에 관한 총책임자의 촬영종료 선언이 없었고 원고의 개별적인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뮤직비디오 촬영현장에서 이탈하였는 바, 이는 뮤직비디오 촬영 시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서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5.12.1. 선고 200520578 판결).

관계가 해소된 경우, 해당 연예인이 기존의 예명 등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때 분쟁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니지먼트사의 연예인 예명 사용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이용권한은 전속계약기간 중에만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하다.[38]

Ⅲ.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중재 적합성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는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연은 계속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는 것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종사자는 독창성(creativity), 이미지(images), 상호관계(relationships)를 중심으로 하여 존속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39]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 철저하게 노출되어 있고, 비즈니스 성공 여부는 창작성(creative), 타이밍(time-sensitive product), 업계 관계자들과의 원만한 네트워크(relationship) 등에 의존한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재를 포함한 ADR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다.[40]

1. 분쟁해결의 신속성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대체로 시간적 한계가 있는 산업이다. 책의 출간이나, 음반의 출시, 영화의 개봉 등을 앞두고 다른 작품과 출시경쟁을 하므로 시장에 출품되는 시기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에

---

37) 최근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이 타인에 의해서 광고로 무단 이용되는 경우, 성명·인격이 가지는 인격권으로서의 측면보다 광고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 내지 무단광고로 인한 이미지 손상으로 차후 광고출연료의 감소 등과 같은 재산권으로서의 측면에 주목하여 인격권과는 구별되는 재산권으로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 한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헌으로는,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상)(하)", 「인권과 정의」 제242호, 243호, 대한변호사협회, 1996.10·11; 나윤수·박홍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4집, 한국법학회, 2006.11; 김세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등 참조).

38) 최정열, "전속 매니지먼트계약", 손경한 편저,「엔터테인먼트법(상)」, 진원사, 2008, pp.273-274.

39) 함영주, 전게논문, p.111; Toni L. Wortherly, "Note, There'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Virginia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Winter 2002, p.169.

40) 최승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중재활성화 방안", 「중재」 제326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 pp.14-17.

서 가처분 절차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엔터테이너의 활동기간이나 인기는 대부분 일정기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소송이 진행된다거나 판매금지나 상영금지처분이 내려진다면 당사자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41] 이와 같은 시간의 민감성이라는 특징은 엔터테인먼트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판절차보다는 단심제인 중재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42]

2. 절차의 비공개성으로 비밀유지 가능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계속적인 관계가 중시되며 사적인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에 속한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이 법원에 제소되면 이미 공지의 사실(public record)이 된다. 당사자들이 유지하고 싶은 사적 정보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측에게는 돈이 되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3] 엔터테이너들이 자신과 관련된 분쟁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노출이 상업적 활용 기회의 박탈로 인식되기 때문에,[44]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은 비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45] 소송절차는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므로 재판과정에서 엔터테이너들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될 위험이 있고, 언론을 통하여 소송의 진행상황이 보도될 수 있으므로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당사자의 향후 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소송보다는 비밀성이 유지되는 중재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46]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중재규칙 제8조), 분쟁당사자는 자신의 공인

41)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기획사들은 소속 엔터테이너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고, 1심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3심까지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관련 연예인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가혹한 고통을 가하는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약용하기도 한다(이재경, 전게논문, p.37; 오석웅, 전게논문, p.129).

42)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time sensitive)에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구속력이 없는 ADR(non-binding ADR)을 이용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당사자들에게는 이익이다.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결판을 내려고 기다리는 시간에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원래 예정대로 음반을 발매하거나 영화를 개봉하는 것이 훨씬 이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Toni L. Wortherly, Id at 171).

43) Toni L. Wortherly, Id at 170.

44) 오석웅, 전게논문, p.132; 남형두, 전게논문, p.329.

45) 최승수·안건형, 전게논문, p.67.

46) 다만, 지나치게 비공개성을 중시하여 증거조사나 심리의 불충분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이재경, 전게논문, p.37).

으로서의 이미지(public images)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7]

3. 저렴한 분쟁해결 비용

인터테인먼트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하여 가동연한이 짧은 해당 엔터테이너는 승소하더라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지만, 거기에다 공연(상연)금지가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되면, 소송비용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재에서는 소송상의 절차를 상당부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더구나 중재의 경우에는 미리 마련된 중재조항에 의하여 절차진행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절감된다.[48]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그 비용이 소송에 비하여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고,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상설중재기관의 경우 미리 합리적으로 책정된 요금표가 작성되어 있어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49]

4. 전문가에 의한 해결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 엔터테이너의 교육 훈련과정에서 투자되는 비용문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의 파괴로 인한 계약해지,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의 계약의 불공정성 등, 통상의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은 이미 살며본 바와 같다. 이러한 분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해결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한다. 소송절차에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분쟁의 특성이나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중재절차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학계, 법조계, 관련 산업계 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에 부합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된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도중 원만하게 합의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시키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47) 비밀유지의 측면만을 본다면 중재보다 조정이 좀 더 비밀유지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조정은 중재보다 전 단계에서 조정기관이 아닌 개인차원 또는 비밀차원의 조정이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Toni L. Wortherly, Id at 171).

48) 조정의 경우에는 소송처럼 당사자들이 절차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이 절감되고 합의를 하지 못하여 소송에 간 경우에도 이미 상당부분의 쟁점들이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다(Toni L. Wortherly, Id at 170).

49) 중재비용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웹사이트를 보면, 중재비용과 소송의 1심비용만 비교하더라도 그 비용절감율은 10-60%에 이르고 있으며, 만일 소송이 3심까지 간다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질 수 있다(www.kcab.or.kr, 오석웅, 전게논문, p.131).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50]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상호간에 계속적인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서로 대립적이 되어 사업관계를 파괴하는 소송절차보다는 중재 등 ADR절차가 중립적인 조언자의 도움을 얻어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다.[51] 중재절차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분쟁해결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의 해결에 적합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5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엔터테이너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엔터테이너 지망생들이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재절차가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렇게 섭외적 법률관계를 가지는 국제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경우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이 더욱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53]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변호사들이나 관련 업체들의 사내변호사들에 의해 법원의 소송이 아닌 ADR, 그 중에서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을 각종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54]

---

50) 남형두, 전게논문, pp.329-330.

51) 예컨대, 미국의 MGM영화사는 New Line 영화사의 영화 오스틴 파워즈(Austin Powers)의 영화 타이틀과 관련하여 소송보다는 ADR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오스틴 파워즈 영화의 스타인 마이크 마이어스(Mike Myers)를 리메이크 영화인 '핑크팬더'에 출연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다만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마이어스가 결국 그 영화에 출연하지는 못했다(Toni L. Wortherly, Id at 71).

52) 이에 관해서는, 이규호,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의 쟁점,「국제사법연구」 제14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8.12, p.40 이하 참조.

53) 국제사건의 경우, 각국의 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어느 나라 법원을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고,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김용길, "지적재산권분쟁의 재판외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2, p.70).

54)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이자 IFTA와 AAA의 중재인이기도 한 Gerald Phillips은, 할리우드에서는 소송이 없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한다(남형두, 전게논문, p.330; Phillips, G. Ignacio, V., "Entertainment Industry Recognizing Benefits of Mediation," 17-WTR Ent. & Sports Law. 29, Winter, 2000).

Ⅳ. 엔터테인먼트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와 같이 중재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해결에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중재 등 ADR의 활성화나 그 성공을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구조적·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다양한 ADR제도의 개발과 적용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이다.[55] 여기에서는 현 제도 하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쟁에 있어서의 중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재제도에 관한 인식제고

미국의 제럴드 필립스는 중재를 활용하지 않는 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56] 즉, 첫째, 회사경영진 들이 조정·중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점, 둘째, 조정·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할지 여부에 관하여 조직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회사가 적다는 점, 셋째, 변호사들이 대부분 소송전문으로 훈련을 받아왔고, 중재나 조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훈련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 넷째, 인하우스 카운슬러가 외부 변호사에 대하여 엄격한 경영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섯째, 회사 실무자들이 상사에게 조정이나 중재를 제안하는 것을 자살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결국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경영진이나 변호사들의 중재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57]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식조사를 한 사례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주로 활동하는 로펌 Phillips, Salmon & Stein이 각종 규모의 방송사와 음반회사로 이루어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75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Phillips Survey)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60%의 회사의 임원들이 조정이나 중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58]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엔터테인먼트

55)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8, p.156.
56) Toni L. Wortherly, Id at pp.172-175; Gerald F. Phillips, "BACK TO MED-ARB: SURVEY INDICATES PROCESS CONCERNS ARE DECREASING", Alternatives to the High Cost of Litigation ADR Survey, April, 26 Alternative to High Cost Litig. 73, 2008, p.3
57) 최승수, 전게논문, p.15.
58) 함영주, 전게논문, p.120; Toni L. Wortherly, Id at pp.172-175. 특히 음악(음반)분야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 ADR과 친하지 않는 분야로 보인다. 음반회사 임직원의 경우 저작권 위반분쟁이 많아 법의 적용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소송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Kaleena

관련 분쟁에 관한 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재제도의 합리성·효율성에 대한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59]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60]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협회들이 중재에 대한 자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61]

2. 대한상사중재원의 적극적 대응

중재제도에 관한 인식제고라는 점에서 보면 엔터테인먼트 관련 협회 자체 교육 및 홍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이들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협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상사중재원이 예컨대 '중재에 의한 엔터테인먼트 분쟁해결'과 같은 테마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매년 이들 관련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로 하여금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시 반드시 중재조항을 넣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예컨대 엔터테인먼트 분쟁관련 전담부를 새로이 설치하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의 전문가(연기자, 가수, 스포츠 분야 등)를 중재인으로 위촉하여 이를 관련 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3. 전문적 중재인 확보

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중재인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쟁과 같이 특정 분야의 분쟁의 경우에는 그 특정 분야에 전문적 식

Scamman, "ADR IN THE MUSIC INDUSTRY: TAILORING DISPUTE RESOLUTION TO THE DIFFERENT STAGES OF THE ARTIST-LABEL RELATIONSHIP", Cardoz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Fall 2008, pp.269-304.

59)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연기자 위주의 연예기획사단체로서, 회원사는 90개 업체 내외이고, 1년에 2회 협회인증 매니저 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협회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재제도를 홍보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안건형,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인 전속표준약관 제정과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중재」 2009년 여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p.66 참조.

60)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국민가요문화의 향상보급과 우리 가요의 세계무대 선양보급, 청소년건전문화조성 및 회원단체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가수 위주의 연예기획사 단체이다(http://www.kepa.net/)

61) 최승수, 전게논문, pp.16-17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임원, 법무팀 실무자 및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ADR 유용성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견을 겸비한 중재인의 확보가 필요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상사중재분야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인을 확보해야 한다.[62] 이제는 중재인도 모든 분야의 중재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특성화하여 특정분쟁에 대하여 특정된 중재인군을 확보하고 이들 중재인명부를 홈페이지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3] 우리나라에는 엔터테인먼트법을 전공으로 하는 교육·연구기관도 있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나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추세이므로,[64] 엔터테인먼트 분쟁 관련 전문적 중재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4. 전문적 ADR기관 설립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분쟁에 대하여 ADR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한다.[6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이외에는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상사중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엔터테인먼트관련 단체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서로 협력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엔터테인먼트 분쟁 관련 전문적 중재인을 확보하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시 중재조항을 넣도록 하는 등, 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계가 연합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ADR기관, 예컨대 '엔터테인먼트중재위원회', 또

62) 미국의 경우, 미국영화마케팅협회(AFMA)는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사법중재조정서비스(JAMS)는 각종 분쟁에 경험이 많은 전직판사를 중재인으로 구성하여,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조정이나 중재에 특화되고 중립적인 성격의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다(함영주, 전게논문, 115면; Toni L. Wortherly, Id at 175).

63) 대한상사중재원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관리하고 있다고 한다(최승수·안건형, 전게논문, p.68).

64) 예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체제가 되면서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법을 특성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있고, 이들을 전공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의 경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규모의 학회로서,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1999년 12월에 창립되어 매년 3-4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 '스포츠와 법'을 매년 4회 발간하고 있다.

65) 미국의 경우 미국영화마케팅협회(AFMA), 미국중재협회(AAA), 사법중재조정서비스(JAMS) 등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의 예술전문변호사 단체인 Arts,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AAMS) 등 지역별 변호사단체가 엔터테인먼트 관련 ADR을 공익소송 또는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최승수, 전게논문, p.17).

는 '엔터테인먼트중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66] 이와 더불어 미국처럼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을 돕기 위한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단체를 조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67]

Ⅴ. 결 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분쟁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쟁은 대체로 다른 분쟁과 차이 없이 법원의 재판, 특히 가처분에서부터 시작하여 본안재판에 이르는 전형적인 민사분쟁의 모습을 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그 특성상 소송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공연이나 상영 중지되거나, 소속사와 배우간의 오랜 법정공방이 언론 등에 의하여 노출됨으로써,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기를 먹고사는 엔터테이너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특별한 분쟁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단심제인 중재는 시간적 민감성을 가진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와 사업관계의 지속 욕구 충족, 저렴한 분쟁해결 비용, 전문가에 의한 판단 등의 중재절차가 가진 장점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은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의 분쟁이 조정·중재를 통하여 해결되는 사례는 아직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

66) 이와 관련하여, 2006년 5월 대한체육회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규정'을 제정하고,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를 창립하여, 스포츠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6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통합되면서 정관에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고, 예산부족과 활동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는 재정지원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트먼트법학회 2008.2, p.91 이하; 김성룡, "스포츠분쟁해결에 있어 국내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트먼트법학회 2012.2, p.71 이하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스포츠 중재를 포함하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중재원' 등의 이름으로 설립·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67) 미국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해결을 돕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조직(volunteer organizations)으로서, 1980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변호사들의 예술중재조정 프로그램(Arts,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 AAMS), 사업목적이 아닌 프로보노(pro bono) 활동과 저비용 ADR운동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세인트 루이스 예술가지원 변호사회계사 자원봉사단체(St. Louis Volunteer Lawyers and Accountants for Arts), 워싱턴 예술가지원변호사 단체(Washington Lawyers for the Arts), 뉴욕예술가변호사 단체(New York Lawyers for the Arts) 등이 있다(함영주, 전게논문, p.115; Toni L. Wortherly, Id at 175).

엔터테인먼트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중재제도에 관한 인식제고를 들 수 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거나, 엔터테인먼트 분쟁관련 전담중재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인을 확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엔터테인먼트중재위원회' 또는 '엔터테인먼트중재원' 등 전문적 ADR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기덕, "전문인의 전속계약 : 연예·체육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김성룡, "스포츠분쟁해결에 있어 국내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트먼트법학회, 2012. 2.

김성태, "엔터테인먼트사업에 있어서 전속메니지먼트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5.

김세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용길, "지적재산권분쟁의 재판외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2.

나윤수·박홍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4집, 한국법학회, 2006. 11.

남형두, "엔터테인먼트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주체측면에서의 이해", 「민사법학」 제35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3.

손경한 편저, 「엔터테인먼트법(상)」, 진원사, 2008.

손범수,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제26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안건형,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인 전속표준약관 제정과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중재」, 여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트먼트법학회, 2008. 2.

연기영, "전속계약상 연예인의 법적 보호문제",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5.

오석웅, "중재제도를 통한 엔터테인먼트분쟁의 해결 : 연예인전속매니지먼트계약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11.

윤석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계약법적 고찰 : 다양한 계약유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2.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8.

이규호,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의 쟁점, 「국제사법연구」, 제14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8. 12.

이범수, "엔터테인먼트의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2.

이우석,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인의 법적보호", 「법학연구」, 제3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6.

이재경, "연예인 전속계약과 중재", 「중재」, 2009년 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장재옥, "K-POP시대 엔터테인먼트법제의 정비방안", 「경영법률」, 제23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장정애, "연예인 전속계약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제419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8.

최승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중재활성화 방안", 「중재」, 제326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

최승수·안건형,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9.,8.

최정열, "전속 매니지먼트계약", 손경한 편저,「엔터테인먼트법(상)」, 진원사, 2008.

최정환, "한국의 매니지먼트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기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한웅길, "전속계약의 계약금(전속금) : 연예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4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2.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상)(하)", 「인권과 정의」, 제242호, 243호,

대한변호사협회, 1996.10.

함영주, “미국엔터테인먼트산업과 조정·중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4권 제1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Gerald F. Phillips, "BACK TO MED-ARB: SURVEY INDICATES PROCESS CONCERNS ARE DECREASING", Alternatives to the High Cost of Litigation ADR Survey, April, 26 Alternative to High Cost Litig. 73, 2008.

Phillips, G. Ignacio, V., "Entertainment Industry Recognizing Benefits of Mediation," *17-WTR Ent. & Sports Law*. 29, Winter, 2000.

Toni L. Wortherly, "Note, There'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Virginia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Winter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System for Entertainment Disputes Resolution

Sang-Chan Kim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s developed along with current Korean wave fever, and so entertainment-related disputes are increasing rapidly. Litigation is a poor fit for entertainment disputes because of characteristics such as temporal sensitivity. Thus, in the US, the entertainment industry resolves these disputes through ADR mechanisms like arbitration, but cases of settling such disputes through arbitrations are very rare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entertainment disputes and considered the compatibility of arbitration as a method for settling disputes, and then suggested tasks for revitalizing arbitration systems as entertainm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bitrations have many merits, such as the rapid pace of procedures, confidentiality, satisfying the long-term desires of business relationships, the low cost of settling disputes, judgments rendered by experts, etc.; thus, it is a very suitable mechanism to settle entertainment-related disputes.

The study proposes necessary steps for revitalizing arbitration systems for entertainment disputes. First, awareness of entertainment industry workers about the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raised. Second, special educational programs for members the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related to entertainment should be set up and operated together with encourag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actions like establishing a dedicated arbitration unit on entertainment disputes. Third, neutral, professional arbitrators should be secured and aggressive disclosures made. Fourth, a professional ADR organization such as an "Entertainment Arbitr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Key Words : Entertainment, Dispute Resolu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rbitration,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Unfairness of Contracts, Entertainer